

대구광역시 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검 토 보 고 서

<제153회 임시회>

2006. 10. 24

달 성 군 의 회
전문위원 과 용 곤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가. 제출연월일 : 2006년 10월 19일

나. 제 출 자 : 달성군수(복지위 생과장)

다. 검토 일자 : 2006년 10월 20일

라. 개정이유

2006년 12월 1일 여성문화복지센터 수영장 개장예정에 따른 이용요금을 명확히 규정하여 수영장 관리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마. 주요내용은

(1) 수영장에 대한 시설사용료 징수근거 마련(안 별표2)

○ 시설사용료(수영장)

구 분	성인 (만19세이상)			중.고생 (만13세~만18세)			유아,초등 (만12세이하)			아쿠아로빅			1일 입장 요금		
	주5회	주3회	주2회	주5회	주3회	주2회	주5회	주3회	주2회	주3회	주2회	성인	중.고 생	유아 초등	
이용 요금	70,000	49,000	35,000	63,000	45,000	35,000	58,000	42,000	30,000	49,000	35,000	3,000	2,000	1,500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1) 이번 개정조례안은 2006년 12월 1일 여성문화복지센터 내 수영장 개장예정에 따른 입장료와 시설사용료(강습료)등 이용요금의 징수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별도의 조문변경없이 【별표2】 안과 같이 이용요금의 기준을 신설하는 것임.
- (2) 구분에서와 같이 “1일 입장요금”을 제외한 이용요금은 강습료로써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시설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가. 제출연월일 : 2006년 10월 19일

나. 제 출 자 : 달성군수(도시건축과장)

다. 검토 일자 : 2006년 10월 20일

라. 제정이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이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마. 주요내용은

(1) 안 제1조(목적)

달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안 제2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
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3) 안 제3조(특별회계의 세입)

국가의 출연 · 보조 · 응자금, 일반회계의 전입금, 특
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금 등

(4) 안 제4조(특별회계의 세출)

-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
-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수립 및 집행
-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 기타 특별회계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5) 안 제5조(준용)

이 조례 규정된 사항이외는 일반회계의 규정을 준용

(6) 안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1)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개발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기반시설 비용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수익자 부담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6. 1. 11)과 같은법 시행령(2006. 7. 11)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써,

- (2)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에 대하여 부과·징수된 부담금 중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에 배분된 70% 중 30%에 해당되는 군 귀속분과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수수료 등 안 제3조(특별회계의 세입)의 규정에 의한 세입관리와 안 제4조(특별회계의 세출)의 기반시설부담금 사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3) 상위법령에 의거 기반시설부담금의 귀속분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위임된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시행령」

- 제3조 (기반시설부담금의 배분 등)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법 제3조에 따라 징수된 부담금을 말한다. 이하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한다)이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가 있는 특별시·광역시·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이 된다.
- ②제18조제1항제1호 후단에 따라 결정·부과하여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은 특별시·광역시·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별로 관할토지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 ③특별시장·광역시장은 기반시설부담금 중 해당 특별시·광역시 귀속분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가 있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말한다)의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을 위한 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④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말한다)는 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금액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법 제5조에 따른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⑤제3항에 따른 교부금은 분기별로 분기 종료 다음 달에 지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가. 제출연월일 : 2006년 10월 19일

나. 제 출 자 : 달성군수(도시건축과장)

다. 검토 일자 : 2006년 10월 20일

라. 제정이유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관리업무에 필요
한 비용의 지원과 공동주택 단지내 각종 분쟁사항에 대한
조정 등을 위하여 「주택법」 제43조 제8항 및 제5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
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

마. 주요내용은

(1) 안 제2조(적용범위)

달성군 행정구역안의 「주택법」 적용을 받는 공동주
택(임대주택 제외)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2) 안 제3조(지원적용 범위등)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분양 주택단지

(3) 안 제4조(지원대상 시설물)

- 단지내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 하수도 준설 및 보수
- 경로당 증·개축 및 어린이놀이터 보수
-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 기타 위해의 방지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이내 재지원 제한

(4) 안 제5조(보조금 교부결정)

달성군 공동주택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 후 보조금
교부결정

(5) 안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부군수)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
-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군의회 추천 2인
공동주택관리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건설과장, 도로교통과장, 공원녹지과장으로 한다.

(6) 안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 사업의 범위와 신청금액 등의 심의
- 우선순위 결정 등

(7) 안 제10조(목적외 사용금지)

- 목적외 사용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반환

(8) 안 제11조(정산보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9) 안 제12조(설치)

- 공동주택관리와 당사자간의 분쟁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10) 안 제13조(기능)

-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을 심의·조정

(11) 안 제14조(구성)

-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10인 이내
(위원장: 부군수)
- 위원은 군수가 위촉

(12) 안 제15조(결격사유) ~ 안 제30조(회의록)

(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1) 이 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공동주택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거 이에 필요한 지원기준과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2) 2006년 10월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77개정도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의 경우 이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우리군이 첫번째로 제정하는 것임.
- (3) 지역주거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를 제정·운영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임. 그러나, 지원대상 공동주택이 있는 도심지역과 제외되는 농촌지역간의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지원요구에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 (4) 지원예산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위하여 안 제4조의 지원대상 시설물(사업)에 대한 지원 한도금액과 지원비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관계법령 ◆

▶ 주택법

제43조 (관리주체 등) ①~⑥항 생략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요구의 방법 및 절차,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 관리주체의 업무, 관리방법의 변경 및 공동주택관리기구(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를 포함한다)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2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①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12.23>

②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

③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인조직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가. 제출연월일 : 2006년 10월 19일

나. 제 출 자 : 달성군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다. 검토 일자 : 2006년 10월 20일

라. 개정이유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인후계자, 4-H후원회 등 각 단체별로 분산된 기금을 일원화하고, 기금출납원을 단일화하여 기금관리 및 지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마. 주요내용은

(1) 달성군 농업인조직 정의 및 기금통합 관리

(안 제2조, 안 제6조 제2항)

-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4-H후원 회의 각 기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통합관리

(2) 농업인조직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변경

(안 제7조)

- 부위원장 4인 → 1인으로 변경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은 농업인조직 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당해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토록 함.

(3) 기금출납원의 변경(안 제12조)

- 당초 각 4개 해당조직체 업무담당의 기금출납원을
농업기술센터지출원으로 변경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인조직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1) 현재 운영중인 「달성군 농업인조직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4-H후원회별로 운영하고 있는 각 육성기금의 관리를 하나의 기금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함으로써 기금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 (2) 농업인조직 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각 조직 체별 기금출납원을 단일화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적정한 개정안으로 보여짐.